

시설장비 검사결과보고서

검사대행기관명:

검사종류	시설장비명 (규격)	관리번호	신청자	실시기간	수수료	검사결과

「향만시설장비 관리규칙」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설장비 검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.

년 월 일

검사대행기관의 장 [인]

지방해양수산청장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

귀하